

용역계약서

계약번호 제2019용 - 8호

공고번호 제2019용 - 2호

계약내용	용역명	부산울산선 11.75k(부산) 등 12개소 비탈면·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금액	일금 일억육백칠십만 (₩106,700,000-)
	총용역부기금액	-
	계약보증금	일금 일천육십칠만원 (₩10,670,000-), 현금 또는 보증서
	지체상금율	0.25%/일
	계약기간	2019. 06. 20. ~ 2019. 11. 29.(164일)
	하자보증기간,율	-
	기타사항	-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과 계약대상자는 상호의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06월 20일

불임서류 :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3. 선금지급조건 1부
4. 파업지시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계약자	발주처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채철표 (인)			
	계약상대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법인등록번호	131211-0040887
		상호	(주)명성엔지니어링	전화번호	031-886-7422
		대표자	김선무	주민등록번호	
연대보증인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상호	-	전화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용역내역서

용역명	규격, 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액
부산울산선 11.75k(부산) 등 12개소 비탈면· 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별첨	₩ 106,700,000- (VAT포함)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선금지급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사에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 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5 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역수행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여기서 "연대보증인"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제 6 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당사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7 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 9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완료기한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체되었을 경우 제10조가 정한 바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해당되는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2항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계약기간연장 등은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자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제 11 조(검사 및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료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료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성과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또는 완료후 용역성과물,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금액을 한도로 당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인수한 용역성과물에 대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 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 제53조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액은 실시협약 제55조(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

제 14 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별로 기성대가를 청구하고, 당사는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성대가의 청구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당사에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당사는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타인자본(국고보조금 포함)이 지급될 시에는 대주단과의 별도 약정된 지급방법(국고보조금일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급 계획)에 의하여 그리고 별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 15 조(준공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완료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당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 17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당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분이 있는 경우 인수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그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실시

협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총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총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당사는 당사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분이 있는 경우 인수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9 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과 그 승인금액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당사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실시협약에서 정한 미지급금에 대한 기준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자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용역계약의 보증이행)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 1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당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이행 완료된 보증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위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1 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당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 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당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며, 본 계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당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4 조(보 칙)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시협약, 실시계획, 계약관리규정, 기타관계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입인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체결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손해보험 등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용역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과업수행 참여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용역감독원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지시 또는 결정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당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과업수행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용역성과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최종대가를 지급받는 날까지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①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제 8 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8 의 2(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 공유 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원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 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 수 있도록 용역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과업을 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보칙) ①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용역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선금지급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가 선금을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이 조건에 의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 상대방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는 선금지급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인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신청하고, 당사는 매분기마다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 사

-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다.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 5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다. 계약금액이 3억원미만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 3 조(선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시는 선금 지급원(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서등의 계약금액을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이행기일이 30일 이내로서 준공금 지급시 이외에는 선금 추가정산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5 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 또는 감독관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6 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또는기납)부분의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제 7 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8 조(사용확인) 당사는 선금사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수시확인 할 수 있다.



칙

이 조건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울산선 11.75k(부산) 등 12개소 비탈면·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9. 6.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도로안전팀

목 차

1. 과 업 의 개 요

2. 일 반 사 항

3. 점 검 계 획 및 세 부 사 항

4. 보 고 서 작 성

5. 정 밀 점 검 실 시 결 과 평 가

6. 성 과 품 제 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부산울산선 11.75k(부산) 등 12개소 비탈면·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1.2 과업의 목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과 동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비탈면·옹벽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대상 비탈면(8개소)

본부	지사	노선	이정 (km)	방향	연장 (m)	높이 (m)	보강형식	준공 년도	안전 등급	비고
부산 경남	울산	부산울산선	11.75	부산	750	67	소일네일	2008	B	2중
			12.05	포항	570	55	록볼트	2008	B	2중
			15.706	부산	260	62	코이어넷	2008	B	2중
			16.2	부산	446	58.5	-	2008	B	2중
			19.78	포항	520	60	록볼트	2008	B	2중
			19.8	부산	550	60	소일네일	2008	B	2중
			47.05	부산	300	60	-	2008	A	2중
			47.05	부산	580	55	-	2008	A	2중

나. 대상 옹벽(4개소)

본부	지사	노선	이정 (km)	방향	연장 (m)	높이 (m)	보강형식	준공 년도	안전 등급	비고
부산 경남	울산	부산울산선	42.7	울산	337.4	10.4	보강토	2008	A	2중
			44.02	울산	165.4	9.5	게비온	2008	A	2중
			해운대서충정 IC R/B	울산	290	7.5	보강토	2008	A	2중
			29.483	울산	211	13	보강토	2008	A	3중

다.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의 범위	비 고
비탈면	기본시설물	- 상부자연 비탈면 - 비탈면 및 비탈면 하부	
	부대시설물	- 보호 및 보강시설 - 배수처리시설 - 이격 거리 내 시설	
옹 벽		- 콘크리트 및 보강토 옹벽 - 석축 및 계비온 옹벽	

라. 과업기간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간

2) 과업기간의 변경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공사(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② 발주처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③ 계약 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 ④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과거 10개년 평균일수보다 현저하게 많아 조사, 측량기간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4 과업 세부내용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평가 • 보고서 작성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기타 정밀점검에 필요한 사항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 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 • 종합평가 • 유지관리 전략 제안 • 보고서 작성

2. 일반 사항

2.1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관련 기준 준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 지침, 발주처의 방침사항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참여 기술자의 자격

-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①항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③항에 의한 기술 자격자로 한다.
- 2) 발주처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3)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내에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변경 전 기술자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2.3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착수신고서 제출

-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착수신고서
 - ② 사업수행계획서
 - ③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④ 세부공정계획서

- 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⑥ 사업수행 조직표
 - ⑦ 안전관리계획서
 - ⑧ 사전검토 보고서
- 2)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서면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공정 관리

-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규정된 양식(별첨#1, #2)에 따라 감독원에 일일 공정(해당 작업일 17시 까지) 및 월간 공정(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②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③ 참여기술자 현황(인력투입현황)
 - ④ 과업수행 계획
- 2)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계획대비 95% 이하)이 생길 때는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2.4 안전 관리

가. 일 반

계약상대자는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상 착용 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본 과업의 수행 기간 동안 필요시 교통 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5 보안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3)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첨#4)를 과업 착수 시 제출하고 우리공사가 정하는 보안규정(보안업무처리예규 제54조)을 준수 하여야 한다.
- 2)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2.6 하도급 제한

-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 시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취소 등 우리공사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①항 및 동시행령 22조 1항 및 별표10에 해당하는 경우 법 기준에 따라 예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2.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정밀점검·성능평가 계획 및 세부사항

3.1.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계획

가. 일 반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계획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 항목 포함
- 2) 기존 점검자료 및 성능평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 5) 정밀점검기간, 성능평가기간 및 계획된 작업 시간 예측
- 6) 정밀점검범위, 성능평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 7)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 8) 기타 점검자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의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지침 및 세부지침
- 3) 그라운드 앵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 4) 옹벽 유지관리 매뉴얼(한국시설안전공단)
- 5)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국토교통부)
-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9)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 법규

3.2.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발주처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기술자문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등 기타 정밀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지침'과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필요시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되거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1) 정밀안전점검 세부 조사항목

구 분			조 사 사 항
절 토 비탈면	비탈면 손상상태		<면밀한 외관조사> - 파괴징후 ·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 비탈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비탈면 파괴요인		<면밀한 외관조사> - 지반상태 · 토질조건 및 토층 심도 · 토질의 연경도 ·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비탈면 형상 · 비탈면 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요인 상태 · 강우 및 지하수 상태(필요시 지진 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 절취 상태, 배수 조건 · 표면 보호 및 보강공 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 조사(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옹벽	콘크리트 옹벽	지반, 기초부	침하, 활동, 계획 선형 오차(전도/경사), 세굴
		전면부	파손 및 손상(재료분리), 균열, 마모/침식, 배수공 상태, 누수, 열화, 박락 및 층분리, 박리, 백태, 철근노출
		기 타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비탈면상태 등)
	보강토 옹벽	지반, 기초부	침하, 활동, 계획 선형 오차(전도/경사), 세굴
		전면부	파손 및 손상, 균열, 유실, 이격, 전면부 배부름
		기 타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비탈면상태 등)
	석축	지반, 기초부	침하, 활동, 계획 선형 오차(전도/경사), 세굴
		전면부	파손 및 손상, 균열, 유실, 이격, 진행성 배부름, 배수공 상태, 채움 콘크리트 상태, 암석의 풍화도
		기 타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비탈면상태 등)
	게비온 옹벽	지반, 기초부	침하, 활동, 세굴
		전면부	채움재 유실, wire mesh,의 파손, 진행성 변형, 결속철망 상태
		기 타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비탈면상태 등)

2) 성능평가 세부 조사항목

구분			평가 및 조사항목	
절 토 비탈면	안전 성능	상태 안전 성능	집수지형	사면 내·외 집수지형 개수
			불안정지질	단층 및 전단대, 습곡, 암맥 등의 분포 규모 및 상태
			불연속면특성	연장성, 틈새, 거칠기, 충전물, 풍화도, 간격
			지반변형	포행, 단차, 배부름 등
			지하수	누수 발생 위치 및 유출량
			배수조건	산마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등
			붕괴이력	세굴 및 표층균열, 표층파괴, 심층파괴 등
			낙석	발생규모, 예상 낙석에너지
			사면상부 상태	상부자연사면의 경사
			인장균열	인장균열 유무(진행성)
		구조 안전 성능	평사투영해석	썩기파괴
				평면파괴
				전도파괴
			한계평형해석	건기시 안전율
				우기시 안전율
				지진시 안전율
	내구성능	지반상태	동적콘관입시험 (DCPT) Nd치	
			토양경도(정밀점검시 대체 시험법)	
			설계(초기)값 대비 슈미트해머 강도 추정값의 비율	
		표면보호공	식생 피복율	
			손상 면적율	
		사면보강공	보강공 두부와 지반의 밀착도	
			보강공 두부의 균열 및 파손	
		절리상태 및 풍화진행도	절리상태 및 풍화 진행도	

구분			평가 및 조사항목		
콘크리트 옹벽	안전 성능	상태 안전 성능	침하, 활동, 배수공상태,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파손 및 손상(재료분리), 균열, 표면열화(마모/침식, 박리, 박락 및 충분리), 백태, 철근노출, 세굴		
			주변영향인자	배수시설	
		사면조사		사면구배, 낙석흔적, 침출수	
	구조 안전 성능	저면활동(평상시, 지진시), 원호활동(평상시, 지진시), 전도, 지지력(평상시, 지진시), 침하, 설계전단강도, 설계휨강도			
내구성능	염화물 침투량, 탄산화 깊이, 피복(표면부) 콘크리트 품질, 염해환경, 동해환경				
보강토 옹벽	안전 성능	상태 안전 성능	침하,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활동, 전면부 진행성 배부름, 판손, 손상 및 균열, 유실, 이격, 세굴		
			주변영향인자	배수시설	
		사면조사		사면구배, 낙석흔적, 침출수	
	구조 안전 성능	저면활동(평상시, 지진시), 원호활동(평상시, 지진시), 전도, 지지력(평상시, 지진시), 침하, 인발파괴, 보강재 파단			
	내구성능	염화물 침투량, 탄산화 깊이, 피복(표면부) 콘크리트 품질, 염해환경 동해환경			
보강재(강재) 발청, 변색, 도막(도금) 두께					
석축	안전 성능	상태 안전 성능	침하,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활동, 전면부 진행성 배부름, 파손, 손상 및 균열, 배수공상태, 유실, 이격, 채움콘크리트 상태, 세굴		
			주변영향인자	배수시설	
		사면조사		사면구배, 낙석흔적, 침출수	
	구조 안전 성능	저면활동(평상시, 지진시), 원호활동(평상시, 지진시), 전도, 지지력(평상시, 지진시), 침하, 벽체의 평균폭			
내구성능	견칫돌 추정강도, 견칫돌 풍화도				
돌망태 옹벽	안전 성능	상태 안전 성능	침하, 활동, 채움재 유실, 와이어메쉬 파손 및 손상, 진행성 변형 발생, 결속철망 상태		
			주변영향인자	배수시설	
		사면조사		사면구배, 낙석흔적, 침출수	
	구조 안전 성능	저면활동(평상시, 지진시), 원호활동(평상시, 지진시), 전도, 지지력(평상시, 지진시), 침하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시설물의 평가

1) 정밀안전점검

가)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침 및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특히 앵커의 경우 '그라운드 앵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웅벽의 경우 '웅벽 유지관리 매뉴얼(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공사 보강토 웅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국토교통부)'의 정밀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및 외관조사망도(Face Mapping)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 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점검 서식에 따라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2) 성능평가

가) 상태안전성능 평가

-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

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상태안전성능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성능평가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구조안전성능 평가

-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과 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래피탐사, 물리검층 등

○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 기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내구성능 평가

-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지침을 따른다. 최종 보고서 평가 결과 '보완' 또는 '부실' 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밀점검, 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1) 제출문(정밀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장)
- 2) 정밀점검 결과표(안전등급)(정밀점검)

- 3)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성능평가)
- 4) 시설물 현황표
- 5) 참여 기술진 명단
- 6) 시설물의 위치도
- 7)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8)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 결과 요약문
- 9)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의 개요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1)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의 목적
-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3) 정밀점검 및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4)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5)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 및 진단, 기술자문 등 실시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 시험 및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정밀점검)

1)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 측정결과의 분석

2)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바. 시설물의 성능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 결과를 작성한다.

◦ 상태안전성능 평가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 구조안전성능 평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 평가 포함)
-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결과 분석
- 안전성능, 내구성능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언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 육안검사 사진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정밀점검)
-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성능평가)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성능평가)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등의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보고서등 관련자료 포함)

5.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

5.1 평가 개요

- 대 상 : 당해연도 준공예정인 정밀점검 용역
- 평가시기 : 용역 준공 전(미흡사항 시정조치 기간 감안하여 평가시기 결정)
- 평가방법 : 보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평 가 자 : 본부 및 지사 담당자
- 평가항목

항 목	계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자료조사· 분석의 적정성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손상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적정성	종합결론의 적정성
점수	100	5	10	20	15	15	20	15

5.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결 과	점 수	조 치 내 용	비고
우 수	90점 이상	- 지적사항 보완	
양 호	75~90점미만	- 지적사항 보완(필요시 현장 재조사)	
보 통	60~75점미만	- 지적사항 보완(현장 재조사)	
시 정	50~60점미만	- 지적사항 보완(현장 재조사) - P·Q 감점(차년도 정밀점검 용역 -0.5점)	
부 실	50점미만	- 지적사항 보완(현장 재조사) - P·Q 감점(차년도 정밀점검 용역 -1.0점)	

※ P·Q 감점은 동일연도에 복수 용역에 참여한 경우 업체당 최대 -3점으로 함.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지분대로 배분하여 감점처리)

6. 성과품의 제출

6.1 성과품의 작성

- 가) 감독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나)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2 성과품 납품 목록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한다.

- 가) 현장조사 사진첩 : 각 9부
-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부록포함) : 각 9부
- 다)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완본수록 CD : 각 9매
- 라) 성능평가 보고서(부록포함) : 각 9부
- 마) 성능평가 보고서 완본수록 CD : 각 9매

6.3 점검 결과의 시스템 입력

계약상대자는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우리공사가 관리하는 비탈면 유지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고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 무 일 지

작성일자 : 2019. . .

작 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역감독원” (인)

○ 용역명 :

○ 공 정 : 계 획 _____ %, 실 시 _____ %, 대 비 _____ %

1. 과업수행내용

금 일 실 적	명 일 계 획

2. 인력투입현황

구분	투입인력			비 고
	내업	외업	현장인부	
투입인원 (당일투입/누계)				
투입인원 명단				

3. 특기사항

※ 장비투입 사항은 특기사항에 기재

()월 업무 보고서

【 용역명 : 】

작성일자 : 2019. . .

작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역감독원” (인)

1. 공정현황

계 획(%)	실 시(%)	대 비(%)	용역기간	비 고

2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공 종	주요 작업내용	투입인원	비고
실 적 (○월)	현장조사			계 :
	· · ·			
	· · ·			
계 획 (○월)	현장조사			계 :
	· · ·			
	· · ·			

3. 유관기관 협의 실적 및 계획

구 분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비 고
실 적 (○월)	고속도로 순찰대 (○ 지구대)		
	○○지사 · · 등		
계 획 (○월)	고속도로 순찰대 (○ 지구대)		
	○○지사 · · 등		

4. 현 안 사 항

-
-
-

5. 건 의 사 항

-
-
-

(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19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9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용)

보안각서

본인은 2019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9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정밀점검 결과 평가표

□ 총괄

용역명		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실)
업체명		평가점수	
평가자	소속	직책	성명 (인)
	소속	직책	성명 (인)
	소속	직책	성명 (인)
피평가자	소속	직책	성명 (인)

□ 용역 현황

과업기간		도금액	천원	낙찰율	%
------	--	-----	----	-----	---

□ 용역 대상

위 치	개 소 수			비 고
	계	비탈면	옹벽	
계				
경부선				
서울외곽선				
⋮				

□ 평가대상 현황

구 분	노선명	이정	방향	높이	길이	관리지사	비 고
비탈면							
옹벽							

□ 평가결과

[평가자 :]

평 가 항 목	가 중 치 (A)	평가척도(B)					평 점 (A×B)	평가결과 요약
		적정	대체로 적정	보통	약간 부족	부족		
		5	4	3	2	1		
①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0.3)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0.4) ◦ 보고서 작성 체계 등(0.3)	1.0							
② 자료조사·분석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조사(0.8)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관련 자료조사(0.6) ◦ 기존 점검·진단보고서 검토·분석 등(0.6)	2.0							
③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하중상태 등 조사(1.0) ◦ 부재변형 등 조사(1.0) ◦ 손상·결함·열화 등 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1.0) ◦ 결함(손상) 발생원인 분석(1.0)	4.0							
④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분석의 적정성 ◦ 조사·시험 항목 선정(1.0) ◦ 조사·시험 방법 및 수량(1.0) ◦ 조사·시험 결과 분석·평가(1.0)	3.0							
⑤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 ◦ 결함 항목별 원인추정(1.5) ◦ 부재(부위)별 원인추정 등(1.5)	3.0							
⑥ 평가결과의 적정성 ◦ 상태평가결과(3.0) ◦ 안전성평가결과(필요시) ◦ 안전등급 지정 등(1.0)	4.0							
⑦ 종합결론의 적정성 ◦ 종합결론(1.0) ◦ 보수·보강 방안(필요시) 등 ◦ 안전·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2.0)	3.0							
※ 가·감점(당해 용역관련 사항에 한함)								
◦ 우수 신기술 활용, 대내외기관 포상 등 수범 사례 제출 시 ◦ 비탈면 사고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 시 ⇒ 지역본부 확인·추천을 통해 평가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점 부여		+3.0점/건						
◦ 정당한 지시 불이행, 불성실한 과업수행으로 지적사항 발생 시 (우리공사 및 중앙행정기관 공문 통보사항)		-3.0점/건						
◦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 -10.0점/건, 부상: -5.0점/건						
평 가 점 수 (100점 만점)	20.0							

1. 대상구조물의 구조적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본 서식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음.
2. ⑥평가결과의 적정성에서 필요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1.5), 안전성평가(1.5)로 반영함.
3. ⑦종합결론의 적정성에서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보수·보강방안(1.0), 안전·유지관리 필요사항 조치(1.0)로 반영함.

□ 지적사항

연번	지 적 내 용	비 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밀점검 평가결과 통보서

□ 평가대상

1. 시설물명 :
2. 지 사 :
3. 용역업체 :
4. 실시기간 : ~

□ 평가내용

1. 평가결과 : 우수, 양호, 보통, 시정, 부실
2. 주요 지적내용

①

②

③

④

⑤

3. 상태등급 변경 필요여부 및 그 사유 : 필요한 경우

4.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기간 :

집 계 표

구 분	금 액	비 고
1. 직 접 인 건 비	31,368,540	
2. 제 경 비	34,505,394	
3. 기 술 료	19,762,180	
4. 직 접 경 비	11,363,886	
6. 대가계	97,000,000	
7. 조정대가계	97,000,000	
8. 부가가치세	9,700,000	
9. 총 계	106,700,000	

내 역 서

공 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 계				106,700,000	
1.	직접인건비				31,368,540	
가.	외업	인,일	60.0	224,061.0	13,443,660	
나.	내업	인,일	80.0	224,061.0	17,924,880	
2.	제경비	식	1	34,505,394.0	34,505,394	
3.	기술료	식	1	19,762,180.0	19,762,180	
4.	직접경비				11,363,886	
가.	여비 및 현장체제비				4,266,795	
1)	여비	인,일	60.0	30,000.0	1,800,000	
2)	현장체제비	인,일	60.0	37,500.0	2,250,000	
나.	차량운행비	일	10	21,679.5	216,795	
다.	현지보조인부	인,일	5.0	152,019.0	760,095	
라.	위험수당	식	1	2,016,549.0	2,016,549	
마.	기계기구손료	식	1	1,568,427	1,568,427	
바.	보고서등 인쇄비	식	1	2,752,020	2,752,020	
6.	대가계				97,000,000	
7.	조정대가계				97,000,000	
8.	부가가치세				9,700,000	